

제342회 임시회  
2015.9.11. (금)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 9. 11 (금)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인수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5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2일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정 및 법령조항 삽입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사업 지원근거 신설  
(안 제10조제7호)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산림자원 및 임업생산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산불·병해충방제·사방 등 재해예방 및 방제사업 지원,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 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토론회, 연찬회 등 지원, 농어업 정보지 지원 등의 지원근거 신설(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신선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이었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14.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5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사업

제11조제16호 및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농기계 임대사업·종합보험 지원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 20. 산림의 조성·육성·관리·경영·임업종묘의 생산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1.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보관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 22.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 지원
- 23. 산림자원 및 임업생산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산불·병해충방제·사방 등 재해예방 및 방제사업
- 25.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
- 26. 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토론, 연찬회 등 지원사업
- 27. 농어업 정보지 지원사업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군수가 제1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장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2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p> <p>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p> <p>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p> <p>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5. ~ 13. (생략)</p> <p>14. <u>“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u></p> <p>제4조(도의 책임) ① <u>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5조 ~ 제9조 (생략)</p>	<p>5. ~ 13. (현행과 같음)</p> <p>14. <u>“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u></p> <p>제4조(도의 책임) ① <u>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5항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 ~ 제9조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도  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  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  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  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p> <p>8.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p> <p>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p> <p>10.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p>	<p>제10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p> <p>-----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발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사업</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11.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제11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 ----- ----- -----.</p>
<p>1. ~ 15. (생략)</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u>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u></p>	<p>16. <u>농기계 임대사업·종합보험 지원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u></p>
<p>17. ~ 18. (생략)</p>	<p>17. ~ 18. (현행과 같음)</p>
<p>19. <u>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u></p>	<p>19. <u>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u></p>

현 행	개 정 안
<p>20. <u>산림의 조성·육성·관리·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20. <u>산림의 조성·육성·관리·경영·임업종묘의 생산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21. <u>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u></p>	<p>21. <u>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보관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u></p>
<p><u>(신 설)</u></p>	<p>22. <u>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 지원</u></p>
<p><u>(신 설)</u></p>	<p>23. <u>산림자원 및 임업생산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산불·병해충방제·사방 등 재해예방 및 방제사업</u></p>
<p>22. <u>농어업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u></p>	<p>24. <u>(현행 제22호와 같음)</u></p>
<p><u>(신 설)</u></p>	<p>25. <u>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23.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2조 ~ 제17조 (생 략)</p> <p>제18조(지원사업 결정) <u>농어업인 또는 시장·군수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u></p> <p>제19조 ~ 제20조 (생 략)</p>	<p>26. <u>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토론, 연찬회 등 지원사업</u></p> <p>27. <u>농어업 정보지 지원사업</u></p> <p>28. (현행 제23호와 같음)</p> <p>제12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p> <p>제18조(지원사업 결정) <u>농어업인 또는 시장·군수가 제1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u></p> <p>제19조 ~ 제20조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4장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u>	제4장 <u>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u>
<p>제21조(심의회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2.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u></li> <li>3. ~ 5. (생략)</li> </ol>	<p>제21조(심의회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2. <u>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u></li> <li>3. ~ 5. (현행과 같음)</li> </ol>
<p>제22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 ②(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제22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p>

현 행	개 정 안
<p>1. ~ 2. (생 략)</p> <p>3.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u></p> <p>④ ~ ⑥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

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